「금융소비자보호규정」 개정 안내

1. 규정명 :「금융소비자보호규정」

2. 제정(변경)의 필요성 : 은행연합회의 「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」 변경 내용 반영

3. 주요 제정(변경) 내용 : 숨은금융자산 감축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추가 등

4.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: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권익 보호(현행과 동일)

5. 시행일자 : 2023년 5월 1일

6. 적용 대상(범위) : 은행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.
다만, 은행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
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.
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,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위임에 따른
하위 규정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
및 관련 법규에 따른다.

※ 첨 부 :「금융소비자보호규정」 개정대비표

하나은행

(첨부)

「금융소비자보호규정」 개정대비표

현 행	개 정 후
제1장 ~ 제7장 <생략> **제1조 ~ 제14조 <생략>**	**제1장 ~ 제7장 <좌동>** **제1조 ~ 제14조 <좌동>**
제8장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체계	**제8장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체계**
제12조 ~ 제14조 <생략>	**제12조 ~ 제14조 <좌동>**
제15조(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) 은행은 휴면 및 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1. 휴면 및 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 및 감축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 2. 금융상품 만기 시 처리방법(자동재예치·자동입금계좌 설정 등) 및 만기통보방법 지정 등에 대한 안내 방안 <신설>	**제15조 (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기준과 절차)** 은행은 휴면 및 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단, 은행은 위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23.05.01> 1. 휴면 및 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 및 감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<개정 2023.05.01> 2. 금융상품 만기 시 금융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시점, 안내내용(만기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 사항 등)과 관련된 사항<개정 2023.05.01> 3. 금융상품 만기 이후 금융재산의 안내시점, 안내내용(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 사항 등), 안내방법, 안내이력 관리와 관련된 사항<신설 2023.05.01>
제16조 ~ 제17조 <생략>	**제16조 ~ 제17조 <좌동>**
제9장 ~ 제10장 <생략> **제18조 ~ 제19조 <생략>**	**제9장 ~ 제10장 <좌동>** **제18조 ~ 제19조 <좌동>**
부칙<제정> ~ 부칙<1> **<생략>** <신설>	**부칙<제정> ~ 부칙<1>** **<좌동>** 부칙<2>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하나은행